##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17

발의연월일: 2021. 3. 8.

발 의 자: 강훈식 • 이용빈 • 맹성규

정춘숙・기동민・홍기원

이광재 · 이장섭 · 송갑석

이규민 의원(10인)

## 제안이유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을 거쳐 대기업까지 원활하게 성장하려면 투자, 융자 등 다양한 형태의 스케일업(Scale-up) 자금이 창업 초기부터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나, 현행 제도는 기업이 필요로하는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창업 초기기업의 시드머니(Seed money)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 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후기 성장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 사 설립 허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부적합한 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

상의 출자금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은 그 조합의 운영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에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의무,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창업기획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겸업하는 경우에 투자의무, 제한행위 등이 각각 적용되어 투자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는 자에 대해 투자의무 적용방식을 개선하고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대정만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며,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며,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그취지에 맞게 그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투자회사 등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설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등록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관한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호라목)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관한 정의를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인수"에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로 변경함.
- 나. 투자의 정의에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신설(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신설함.
- 다. 투자조건부 융자계약 신설(안 제2조제12호 및 제8장제70조의2 신설)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에 융자기관이 저리 융자를 해 주는 대신 소액의 지분인수권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조건부 융자계약 제도의 근거를 신설함.
-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명칭 변경(안 제2조, 제37조부터 제51조까지, 제63조, 제67조, 제72조, 제74조 및 제75조, 제77조, 제80조)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맞게 회사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함.
- 마.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요건 강화(안 제12조제3항) 미성년자, 피성년·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바. 개인투자조합 해산사유 정비(안 제18조)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타 법률에 따라 등록 · 인가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도 해산사유에 포함되도록 함.

사. 개인투자조합의 공시(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30조, 제80조)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결산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과 태료를 부과함.

- 아.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정처분 강화(안 제22조) 법령을 위반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 창업기획자 겸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안 제26조 및 제51조)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전문회사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직접투자의무는 적용하지 않는 한편, 초기창 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의무를 신설함.

차. 창업기획자 등록 후 3년 이후 투자의무 유지(안 제26조)

창업기획자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투자의무를 유지하도록 함.

카.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안 제27 조제3항 신설)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 적용하도록 함.

타.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요건 추가(안 제36조 및 제49조)

경영건전성 개선 요구 미이행, 미공시 또는 투자실적 미보고시 해당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의 행 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완화(안 제37조)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투자회사,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함.

하.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및 등록의 취소(안 제51조 및 제 62조)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 투 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투자의무를 준수하 지 않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등록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 록 함.

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요건 등 신설(안 제51조의2 신설 및 제62조)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목적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립 또는 운영하는 경우 이를 설립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 너. 개인투자조합 벌칙 신설(안 제78조제1항제3호)

제1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자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부과할수 있도록 함.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를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종전의 마목)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을 ""벤처투자회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 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 12. "투자조건부 융자"란 융자를 받는 법인이 융자를 실행하는 기관에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신주배정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으로 서 제70조의2에 따른 방식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

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 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 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제2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었 던 자로서 개인투자조합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말한 다)에 해당하는 자

9.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한 사람

제18조제1항제4호 중 "제36조"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한다.

- 1.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 2. 그 밖에 개인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1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2. 시정명령

제2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투자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창업기획자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및 운용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을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 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를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은"으로, "투자비율을"을 "투자의무를"로 한다.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를 겸영(兼營)하는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은 제39조에 따른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1조"를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공시 또는 제61조"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32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 11.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5장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식회사로서"를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또는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임원"을 "임원(주식회사는 임원,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를 "벤처투자회사의"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을 "벤처투자회사의 하다, 같은 호 카목,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를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을 "벤처투자회사는"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를 "벤처투자회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을 "벤처투자회사는"을 "벤처투자회사는"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을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을 "(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를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이익"을 "벤처투자회사의 이익"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의"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을 "벤처투자회사 또는"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를 "벤처투자회사가"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사기를 "벤처투자회사가"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를 "(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로 하고,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사채 발행)"을 "(벤처투자회사의 사채 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결산보고)"를 "(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를 "(벤처투자회사의 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영업양도 등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권리·의무의 승계)"로 의 승계)"를 "(영업양도 등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권리·의무의 승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를 "벤처투자회사가"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를 "벤처투자회사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를 "(벤처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의 말소)"를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을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를 "벤처투자회사가"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를 "벤처투자회사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및 제7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를 "벤처투자회사가"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건전한"을 "벤처투자회사의 건전한"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을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를 "벤처투자회사에"로 한다.

- 12.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3. 제45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 14.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 2. 벤처투자회사

제5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 중 하 나 이상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1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1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 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1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① 벤처투자조합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 2.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 3. 벤처투자조합이 단독으로 100퍼센트 출자한 회사일 것
  - 4.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5.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게 회사 재산의 운용을 위탁할 것
  - ②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③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비중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투자목적회사 업무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제52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투자조합"은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 ⑦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투자 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51조제6항 및 제70조제5항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해당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51조의2를 위반하여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제6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67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8장의 제목 "보칙"을 "투자조건부 융자"로 한다.

제8장에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0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 제71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 야 한다.
  - 1.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으려는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은 제외한다)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일 것
  - 2. 제1호에 따른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체결 시 융자총액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내 로 융자기관에 대한 신주배정을 약정할 것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신주배정을 약정받은 융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융자기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관은 융자 또는 투자심사를 위한 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

를 해당 비상장법인의 동의를 받아 상호 제공할 수 있다.

- 1. 벤처투자회사
- 2. 벤처투자조합
-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업자
-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7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장 보칙

제7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벤처투자회사

제74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75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77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또는"을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또는"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를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를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로 한다.

제9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장 벌칙

제78조제1항제3호 중 "제5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벤처투자조합의"를 "제14조제2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로 한다.

제80조제1항제3호 중 "제32조"를 "제21조의2,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 항제3호 중 개인투자조합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이 2020년 8월 12일 이전인 창업기획자는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창업기획자 중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날이 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투자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에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시행 이후 등록한 벤처투자회사로 본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호, 제28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 ③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 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너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⑥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⑦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2항제3호다목,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의4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제1호, 제1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4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를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 다)"로 한다.

제13조의4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

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 •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로 한다.

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8조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를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

다.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8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1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라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	
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	
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충족하는 <u>조건부지분</u>	조건부지분
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	인수계약의 체결
<u>수</u>	
<u>&lt;신 설&gt;</u>	마.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
	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
	<u>결</u>
<u>마</u> . 그 밖에 가목부터 <u>라목</u> 까	<u>바</u> <u>마목</u>
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	
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1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10. " <u>벤처투자회사"란</u>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 한 회사를 말한다.

11. "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 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 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 서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 합을 말한다.

<신 설>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 록 등) ①·② (생 략)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 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 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11	벤처투
<u> 자회사</u>	

12. "투자조건부 융자"란 융자 를 받는 법인이 융자를 실행하는 기관에 「상법」 제418 조제2항에 따른 신주배정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방식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는 자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 는 자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 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사람
- 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 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④ ~ ⑥ (생 략)

제18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① 제18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① 개인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 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 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제2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이었던 자로서 개인투 자조합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면 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제1 항제1호 또는 제2호(임원으 로 있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 당하는 자
- 9.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 당한 사유 없이 약정일이 3개 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 을 초과한 사람

④ ~ ⑥ (현행과 같음)

- 1. ~ 3. (생략)
- 4.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제36 조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 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 게 된 경우
- 5. (생략)
- ② ~ ④ (생 략)
- <신 설>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등) ①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ㄷ /뉙케기 기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당 업무
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
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합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2. 그 밖에 개인투자조합의 운
영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느 사하

- <u>는 사항</u>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 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 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 <u>1. 경고</u>
- 2. 주의
- ③・④ (생 략)

제26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제

①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 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 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

<u>6</u> ७भे
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
명령 또는 경고조치
1. ~ 11. (현행과 같음)
②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정지
<u>3</u> . (현행 제1호와 같음)
<u>2. 시정명령</u>
③・④ (현행과 같음)
126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①

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 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 기획자가 투자회수・경영정상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 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 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 다.

③ (생 략)

제2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제2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① · ② (생 략)

<신 설>

----. 다만, 제50조제1항제 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경 우에는 본문에 따른 투자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창업기획자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제5 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벤처투자 조합을 결성 및 운용하여야 한 다.

②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 투자의무를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 투 자의무를 -----

③ (현행과 같음)

-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벤처투자회사를 겸영(兼營) 하는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은 제39조에 따른다.

제30조(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제30조(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 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제 32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공시 및 제6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의 공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 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직 무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정당 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 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1. ~ 6. (생 략)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

정보의 이용 금지)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투자
조합의 공시 또는 제61조
1. ~ 6. (현행과 같음)
세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세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
등) ①
등) ①

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③(생 략)
제5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37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경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2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u>경우</u>
11.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
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장 벤처투자회사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①
벤처투자회사

다.

- 1. ~ 8.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u>중소기업창업</u> <u>투자회사</u>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상법」에 따른 <u>주식회사로</u> <u>서</u> 자본금의 규모와 그 자본 금에서 차지하는 차입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2. <u>임원</u>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경우 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가. ~ 바. (생 략)

사. 제48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49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
1. ~ 8. (현행과 같음)
② <u>벤처투자회사</u> -
·.
1 <u>주식회사 및</u>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또는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
<u>로서</u>
2. 임원(주식회사는 임원, 유한
회사・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을
말한다)
<u> </u>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 사 등록 취소 사유를 통보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등록말소일부 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제4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이 시위 시위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자. · 차. (생 략)

카.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 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임직원

3. • 4. (생략)

벤처투자회사
<u></u>
of
<u>벤처투자회사의</u>
<u>벤처투자회사 등</u> 록
<u>7</u> 
자.·차. (현행과 같음) 카 <u>벤처투자회사</u>
기: <u>백기 기위기</u> 
3. · 4. (현행과 같음)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투
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
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 ④ (생 략)
⑤ 제1하브터 제4하까지에서 규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 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의 50 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37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 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 야 한다.
  -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o. <u>L          </u>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벤처투자회사</u>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벤처투자회사는
벤처투자회사가
· ② <u>벤처투자회사는</u>

5 베처투자회사----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 사가 투자회수·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 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비 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중소기업창업투자회</u> 산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 1. · 2. (생략)
  - 3. 그 밖에 <u>중소기업창업투자회</u> 사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

<u>벤처투자회사가</u>
<u>.</u>
③
벤처투자회사
<u>.</u>
제39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①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회사-
· 1.•2. (현행과 같음)
3 <u>벤처투자회사</u>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 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 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 제40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u>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u>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2 <u>벤처투자회사</u>
제	40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① 벤처투자회사의
	<u>대주주</u>
	<u>벤</u> 처투자회사
	의 이익
	<u>1. 벤처투자회사</u>

지 아니하다.

-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 사의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3. <u>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u>로 하 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 하는 행위
- 4. 금리, 수수료 또는 담보 등에 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 하여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 으로 대주주등 자신이나 제3 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5. (생 략)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 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등 이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기 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대주주등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u>.</u>
2
<u>벤</u> 처투자회사
3. <u>벤처투자회사</u>
4
<u>벤처투자회사</u>
5. (현행과 같음)
② 벤처투
자회사의
벤처투
~~~~~~~~~~~~~~~~~~~~~~~~~~~~~~~~~~~~~
·
· <b></b>

제	41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u>경영건전성 기준)</u> ① <u>중소기업</u>
	<u>창업투자회사</u>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
	어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u>중소</u> <u>기업창업투자회사</u>의 경영건전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 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 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 결 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 다고 인정되면 그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중 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지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며, 「자

제41조(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
성 기준) ① 벤처투자회사
② <u>벤처투</u>
<u> 자회사</u>
③ <u>벤처투</u>
<u> 자회사가</u>
<u>벤처투자회사</u>
<u>에</u>
·.
제42조(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제45조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공시 및 제6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시에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알게 된 자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중소기</u> 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로 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된 자
-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

<u>벤처투자</u>
회사
<u>1. 벤처투자회사</u>
2 <u>벤처투</u>
<u> 자회사</u>
3. <u>벤처투자회사</u>

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지	]-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5. · 6. (생략)

- 제4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사채 발행) 중소기업창업투자회 사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20배 이내의 범 위에서 「상법」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4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결산보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 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 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

여야 한다.

  4. 벤처투자회사
5.・6. (현행과 같음) 제43조(벤처투자회사의 사채 발 행) 벤처투자회사
  제44조 <u>(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u>
<u>벤처투자회사</u>
제45조(벤처투자회사의 공시) ① <u>벤처투자회사</u>
,

- 1. ~ 4. (생 략)
- ② (생 략)
- 제46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중소 기업창업투자회사 권리・의무 의 승계) ①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 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 인이 종전의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에는 그 양도일 또는 분할・합 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 기업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합 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또는 분할·합병일부터 종전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지위 를 승계한다.
- 제47조<u>(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u> <u>록 등의 공고)</u> 중소벤처기업부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벤처
투자회사 권리・의무의 승계)
① 벤처투자회사가
벤처투자회사의
② (현행과 같음)
③
<u>벤처투자회사</u>
제47조(벤처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장관은 <u>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u>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제4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록의 말소) ①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 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 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u>중소</u> <u>기업창업투자회사</u>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하면 지 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 다.

제4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

<u>벤처투자회사</u>	
1. ~ 3. (현행과 같음)	
제48조 <u>(</u> 벤처투자회사 등록	·의 말
<u>소)</u> ① <u>벤처투자회사</u>	
②	벤처투
<u> 자회사</u>	
제49조 <u>(벤처투자회사 등록</u> 9	의 취소
<u> 등)</u> ①	
벤처투자회사가	
<u>벤</u> 처	투자회
사에	

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u>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u>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된 경우
- 3.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 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제37조제2항제2 호 각 목(차목과 카목은 대표 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만 해 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 산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 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생략)
- 5. 제38조를 위반하여 <u>중소기업</u> <u>창업투자회사</u>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6. (생략)
-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u>중</u> 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

1. (현행과 같음)
이 베퀴토키취기
2. 벤처투자회사
3
·
<u>벤처투자회사</u>
4. (현행과 같음)
5 <u>벤처투자</u>
회사
6. (현행과 같음)
7
그 코트기회사
<u> 처투자회사</u>

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 11.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 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 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 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요

8. ~ 11. (현행과 같음)
12.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5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u>경우</u>
14.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
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② <u>벤처투</u>
<u> 자회사가</u>
벤처투자회사
의 건전한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
벤처투자회사에

구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③ (생 략)
-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생략)
  -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3. ~ 5. (생략)
  - 6.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
록 등) ①
<u>.</u>
1. (현행과 같음)
2. 벤처투자회사
3. ~ 5. (현행과 같음)
6

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생 략)

7. (생략)

② ~ ⑦ (생 략)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 ①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 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

•
가
벤처투자회사
나.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
획자를 겸영하는 경우 해당 업
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
투자조합 중 하나 이상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
용하여야 한다.
③ <u>벤</u>
처투자회사

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의 투 자비율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다.

④ 벤처투자조합이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 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단서 신설>

1. • 2. (생략)

⑤ (생략)

<신 설>

<b>4</b>
다만,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을 인수·합병하는 벤처투자조
합에 대해서는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
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
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
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벤처투자

조합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를 달

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u> </u>	

- 제51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 목적회사) ① 벤처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 2.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제37 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 3. 벤처투자조합이 단독으로 10 0퍼센트 출자한 회사일 것
  - 4.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5.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회사 재산의 운용

## 을 위탁할 것

- ②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다.
- ③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차입비중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보증지원을 할수 있다.
- ⑤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투자목적회사 업무의 집행등에 관한 사항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제52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투자조합"은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 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 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4. ~ 10. (생략)

1. ~ 3. (생략)

<u>⑦ 「상법」 제317조제2항제2</u>
호·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
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세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1. ~ 3. (현행과 같음)
4. 제51조제6항 및 제70조제5항
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
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해당 투
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
<u> </u>
5. 제51조의2를 위반하여 투자
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
<u>한 경우</u>

6. ~ 12. (현행 제4호부터 제10

### ② ~ ⑤ (생 략)

- 제63조(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①·② (생 략)
  -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벤처투자조합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벤처투자 조합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 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9조제1 항・제2항 또는 제62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

호까지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벤처투자회사
<u>.</u>
④
벤처투자회사

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 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조치결과 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 제67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저
  - ① 한국벤처투자는 제66조제1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 5. (생략)
  -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 6. 벤처투자회사----성
  - 7. · 8. (생략)
  - ②·③ (생 략) 제8장 보칙

<신 설>

세67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①		

-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7. · 8. (현행과 같음)

제8장 투자조건부 융자 제70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융자기관" 이라 한다)은 벤처투자를 받았 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과 투자 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 제71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 리주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

- 2.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 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으려는 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 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 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은 제외한다)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이하이 하이 조에서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일 것
- 2. 제1호에 따른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체결 시 융자총액의 1 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비율 이내로 융자기관에 대한 신주배정을 약정할것

# <신 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 저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검사하거나 다음 각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신주배정을 약정받은 융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신고하여야 한다.
- ④ 융자기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관은 융자 또는 투자심사를 위한 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를 해당 비상장법인의 동의를 받아 상호 제공할 수있다.
- 1. 벤처투자회사
- 2. 벤처투자조합
-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 른 신기술금융업자
-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 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제9장 보칙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5. ~ 7. (생략)
- ② ~ ④ (생 략)

제74조(업무기준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벤처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5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22조·제36조·제49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한다.

제7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 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u>중소</u> 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

<u>-</u>
1. ~ 3. (현행과 같음)
4. 벤처투자회사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4조(업무기준의 고시)
벤처투자회사
·.
제75조(청문)
<u>벤처투자회사</u>
 제7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 / / / / / / / / / / / / / / / / /
벤처
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
<u> </u>

합, 한국벤처투자 또는 모태조합이 아닌 자는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9장 벌칙

-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2. (생략)
  - 3. 제5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 여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 자신의 이익이나 제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 제8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1. · 2. (생략)
  - 3. 제32조, 제45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u> 벤처투자 또는</u>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제10장 벌칙
제78조(벌칙)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제2항제1호, 제52조제
2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투
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
제80조(과태료) ①
세00조(과대표) ①
1.·2. (현행과 같음)
3. <u>제21조의2, 제32조</u>

4.	•	5.	(생	략)

- 6. 제77조를 위반하여 전문개인 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 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6
<u>벤처투자회사</u>
② (현행과 같음)